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6. 11. 김용민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5. 6. 12.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7. 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7. 9.)

상정・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5.)

상정・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1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 3. 18.)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김용민의원)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음.

오늘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지 검찰 권한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국민의 권익

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법률안은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현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소청'과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여 담당시키고,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으로, 검찰청의 기능과 조직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여 검찰에게 집중된 형사사법 권한과 그 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관 간 권한 분산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됨(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개정안을 반영하여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